

영등포구의회  
제 1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77호로 2015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극소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조항 및 예외규정 변경  
(안 제2조제3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조문을 원용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1조)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례 정비  
(조례 별지 서식→ 법 시행규칙 서식 사용)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법 시행규칙 서식 4의3, 4의4)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법 시행규칙 서식 4의5, 4의6)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서식 35의2)

▶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서식 36의3)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의2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7. 9 ~ 7. 29)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극소수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 면적 250㎡ 미만의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함.

- 과태료 부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처리 계획 신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원용토록 삭제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취지에 맞도록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시행일 : 2016.1.21.]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14.1.14.]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떡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